정책보고서

2023-02호

2023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STARTUP ALLIANCE

KOREA STARTUP FORUM

정책보고서

2023-02호

STARTUP ALLIANCE

KOREA STARTUP FORUM

2023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들어가며

스타트업은 많은 분야와 그 수만큼 정책 이슈와 과제도 다양합니다.

그러한 스타트업 정책 이슈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2023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자료집 형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신구산업 갈등, 규제 샌드박스 등 주요 정책 이슈는 물론, 부록으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겨있습니다.

특히,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매년 스타트업들의 고충 사항을 조사해 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슈페이퍼, 연구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록에 실린 규제 과제들은 지난 1월부터 정부에 제출한 과제 가운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규제 과제를 제출한 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보면 규제 개선에 적극적인 부처(부서)가 있는 반면, '수용 곤란', '장기 검토' 등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규제가 한 번에 해소되기를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인 변화라도 있어야 하는데 ‘수용 곤란’과 같은 답변이 제시되면 해당 스타트업은 사업에 어려움은 겪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규제 과제들이 개선되어 스타트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약 2개월에 걸쳐 마련한 본 자료집이 스타트업 정책 결정 및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앞으로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목차

□ [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입법 방향 검토 ····· 1
□ [이용자보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입법 방향 검토 ····· 11
□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관리 방향 검토 ····· 17
□ [자율규제]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23
□ CP-ISP 간 망 이용계약 논란으로 인한 분쟁해결 방안 검토 ····· 28
□ 규제샌드박스 제도 스타트업 고충 완화 요청 ····· 38
□ 벤처기업 지원 법률 상시화 ····· 45
※ [부록] 규제 개선 과제 모음 ····· 48
- 리걸테크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 49
-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및 약 전달 허용 ····· 54
- 온라인 통신판매사기행위 피해 구제 ····· 64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리뷰 규제 ····· 67
- 디지털 도어록 배터리 규제 ····· 71
-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요건 ····· 76
□ 참고자료 ····· 80

[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입법 방향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 부활) 온라인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기구 출범 이후, 그간 주춤했던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가 '22.10. 이른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를 계기로 다시금 부활함**

* '22.10.15. 경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핵심 서비스 중단사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통신 재난 관리체계 수립·운영 대상 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직접 정보통신시설 사업자(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을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이하, "방발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됨

○ (온라인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법안) 21대 국회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총 18건으로 **특히, '22. 11.부터 발의된 법안만 무려 9건에 달함**('23.8.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규로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3.1.12.부터 시행

〈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현황(′22.11.~′23.8.)

일자	법(안)명(의안번호/대표발의자)
′23.7.4.시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19152호, ′23.1.3.공포)
′22.11.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118054/오기형의원)
′22.11.08.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2118166/배진교의원)
′22.11.1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118227/윤영덕의원)
′23.01.1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119504/양정숙의원)
′23.02.16.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2120047/이동주의원)
′23.04.07.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121211/박주민의원)
′23.04.11.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2121273/백혜련의원)
′23.04.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121638/서영교의원)
′23.05.25.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122255/윤영덕의원)

□ (우려 1)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사전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수범대상' 에는 시장 내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수 기업들이 포함될 우려가 있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기업규모에 따른 수범대상 선정의 불합리)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의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액, 판매금액 등 기업규모만으로 수범대상을 정의하고 있어 **작은 규모, 짧은 업력, 적은 종업원 수의 스타트업도 법안에서 정하는 매출액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중고차, 인테리어 등 업종에 따라 기업 규모 대비 판매금액이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음

> 참고) 현행 공정거래법 「제6조」는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 제외)인 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그림〉 법안 기준별, 규제적용 대상 중 적자 스타트업 비율('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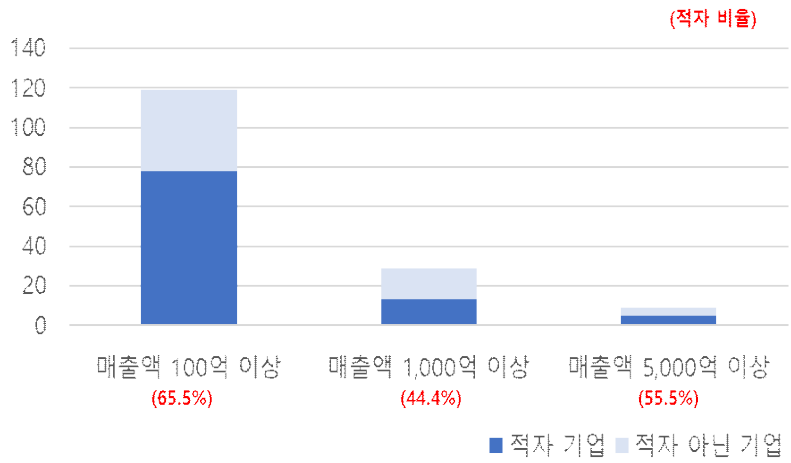

*출처: 혁신의 숲, The VC 데이터를 국민대SME 연구센터가 분석;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발표문(2023)

○ (공정위 자의적 판단 가능성) 특히, 법안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예정하고, 그 판단에 참고하는 사항조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함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정위의 재량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그 결과, 스타트업에게 규제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 증가, 투자 저하 등 생태계 혁신 전반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지배할만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플랫폼이 규제를 받는 불합리함이 초래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 (이용자 수 기준에 따른 수범대상 선정의 불합리)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이용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고 있는 바, 플랫폼 서비스 환경은 전환비용(transaction cost)이 낮아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으므로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하여 시장 내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으로 규제 적용 대상을 선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은 총 9개에 달하며('23.6.기준), 그 중 순간적인 이슈로 이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다가 기준치 이하로 감소한 스타트업, 이용자 수만 많을 뿐 실질적인 수익은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 등이 포함되고 있음

* 예) A 스타트업: 한 달 간격으로 이용자 수가 1,000만대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가 하락을 반복(MAU 75.3만(′21.3.) → 1,072.7만(′21.4.) → 981.1만(′21.5.))
* 예) B 스타트업: 이용자 수는 1,000만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으나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적자만 수백억 원에 달함

<그림> A 스타트업, 이용자 수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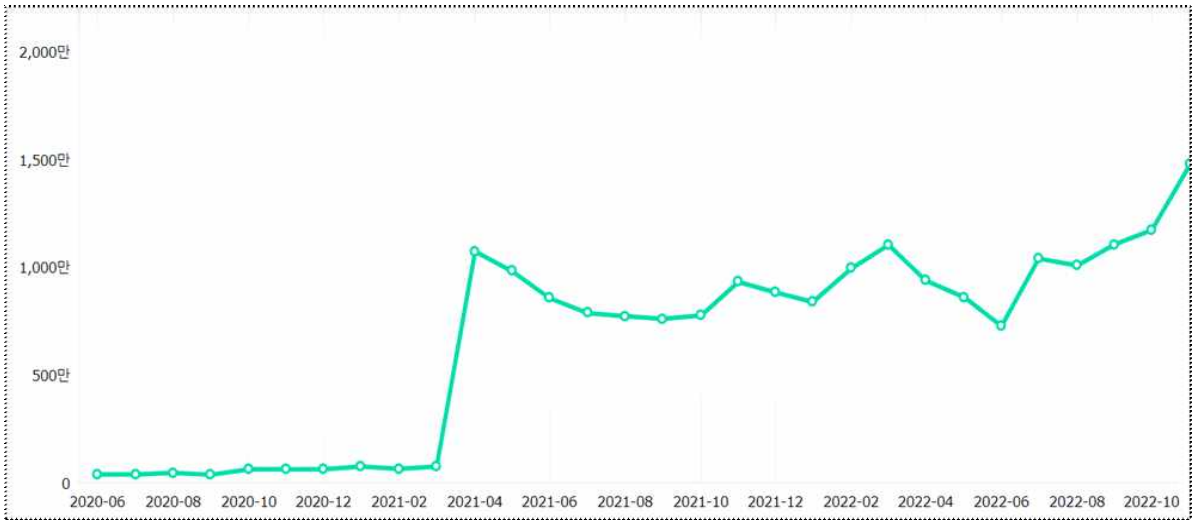

*출처: 혁신의 숲 데이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발표문(2023)

○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변화에 따라 사후적 철회제도를 두고 있는 법안도 있으나,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스타트업에 입증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지정철회는 공정위의 선택사항이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 할 수 있음

□ **(우려 2) 일부 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해당 법안**

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주식, 지분, 자산의 인수를 통한 M&A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 → 투자 → 성장 → 엑시트 → 재창업 및 재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IPO나 M&A 등 엑시트 시장 환경의 조성이라 할 수 있음

○ 국내 시장에서 IPO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M&A까지 금지할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가 급속히 경직**될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을 통한 잠재적 역량까지 소멸시키는 등 국가 경쟁력에 위기 초래

* '15년부터 '20년까지 신규상장 기업 수는 약 72개, 연평균 스타트업 창업을 1만 건이라 가정한다면, 창업 이후 IPO로 엑시트 할 수 있는 비중은 0.7%에 불과

〈그림〉 세계 5강의 IPO, M&A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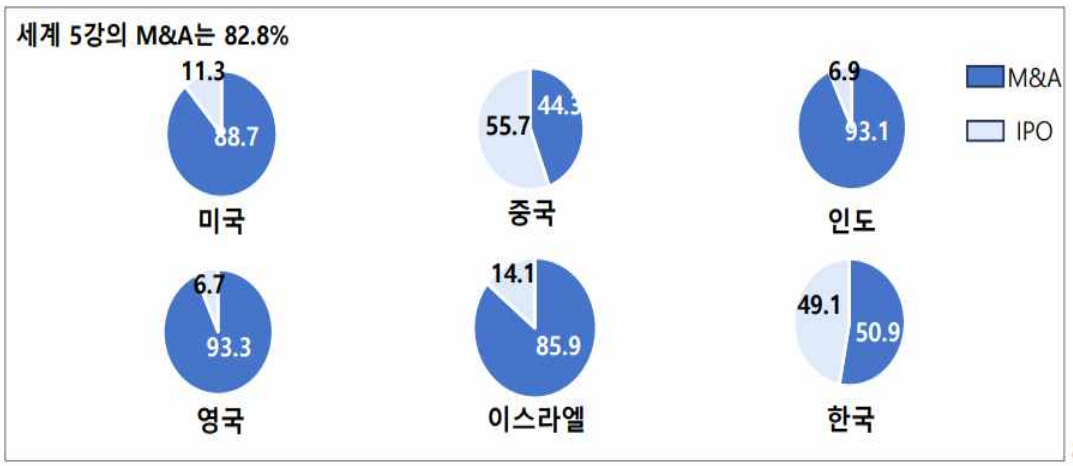

*출처: STEPI,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개발 연구(2021)

□ **(우려 3) 이러한 강력한 사전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수, 이용사업자 수, 연매출액 등의 지표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밝히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 당국조차 해외 사업자의 정보를 추정할 뿐이어서 본 법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실제 '18, '22 등 국감 현장에서 해외사업자 매출 비공개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결국,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자료 파악이 용이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본 법안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자국 플랫폼에게 자칫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음

2 개선방안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제 법률을 도입할 정당성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입법을 진행하기보다는 오히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현행 법률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여러 기업들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이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성향이 강하며, 서비스 간 높은 차별성 등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나 점유율 등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 시장이므로 특정 업체가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래의존도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음**

-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데 자본, 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이 특별하게 요구되지 않고, (2)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3)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두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고, (4)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온라인 판매공간을 가지고 있음

○ 통상,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규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왔던 미국, EU조차 최근 규제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미국, EU의 규제는 규제 목적, 적용 대상

의 규모 및 수준 등에 있어서 국내 상황과 매우 큰 차이가 있음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된 목적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Google, Apple, Facebook, Amazon) 견제를 통한 자국 플랫폼 산업 보호'에 있음**

〈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상

미국 반독점 패키지 법안	EU 디지털시장법(DMA)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대상)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미국 내, 온라인 시장점유율) **아마존(75%)**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애플(55%)** (미국 내, SNS 시장점유율) **페이스북(70%)** (미국 내, 검색시장점유율) **구글(82%)**	대상 중, EU 플랫폼 없음 (대상)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 5곳, 삼성전자,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	EU 플랫폼은 독일의 잘란도(Zalando) 뿐 ('21년 기준 이용자 수 5,100만명, 수익 14조 5,654억) (대상) 알리바바, 알리 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MS) 빙, 부킹닷컴, 페이스북, 구글 플레이, 구글 맵, 구글 서치, 구글 쇼핑,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틱톡, 트위터, 위키피디아, 유튜브, 잘란도

*출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제 발표문(2023)

○ 특히, 최근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왔던 미국에서도 규제 법안의 대부분이 폐기[1]되었고, EU에서도 규제 지향적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흐름이 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해야함**

- (미국) (1) 법안 규제 대상의 광범위 및 불명확하고, (2) 기존 경쟁법과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추가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으며, (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1) 미국 하원이 2021.6.경 발의한 5개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비용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을 제외한 나머지 법 모두 폐기

과도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성장 및 혁신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EU) DMA의 경우, (1) 지금의 규제 적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고,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다각화로 인해 서비스를 정의하고 서비스 간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DSA의 경우, (1) 불법 콘텐츠 등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반드시 대규모 플랫폼에서 더욱 만연하다고 확신할 수 없고, (2) 규모별 차등규제 또한 후기 단계의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플랫폼 성장을 저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용자보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입법 방향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판매자 소비자(B2C) 간 온라인 쇼핑몰 중심 거래*에서 중고거래, 리셀(re-sell) 등 개인 간 거래(C2C)로 확대** 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상품·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2022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B2C)은 209.9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09.2조 원(상품거래액 78.1조 원, 서비스 거래액 31조 원)에 달함(대한상공회의소, 2023)

** 개인 간(C2C) 거래로 대표되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21년 24조 원으로 2008년 4조 원 대비 6배가량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23), 리셀 시장 자체만으로도 2025년까지 약 2.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베스트투자증권, 2022)[2)]

○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간 분쟁 및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 및 구제책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가품 거래)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된 위조상품은 41만 점 이상으로 가품 거래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규모는 약 22조 원으로 추산(특허청, 2023)[3)]

** (피해 구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장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쇼핑몰은 중개 쇼핑몰이라는 답변이 53.1%로 나타남(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 2019)[4)].

---

2) 이뉴스투데이, 시장은 커졌지만・・・리셀 플랫폼, 수익구조 변화 나선다(2023.5.13.일자 기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911, 2023.9.10.최종확인)

3) 어패럴뉴스, 플랫폼의 가품 거래 방치, 법적 책임 강화된다(2023.3.30.일자 기사)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204832, 2023.9.10. 최종확인)

리셀 플랫폼 관련 이용자 피해는 2021년 대비 251.3% 증가하였으나, 이용자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이베스트투자증권, 2022)

□ **이에, 일각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위조·위해 상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플랫폼사업자에 사전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음**

○ (정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상품 정보의 진위와 하자 및 가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 2022년 12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도록 하였는바, 가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계약 해지, 패널티 및 고발조치를 통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 (주요 법안) 최근 발의 법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으로, 전자거래에서의 위조상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 책임 부과, 문제 상황 발생 시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및 판매자 계정 영구삭제 등 조치 의무 부과,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시 손해 발생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모니터링 및 근절 조치 의무) 상표법 일부개정안(이원택 의원 대표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권명호 의원 대표 발의)

- (손해 연대배상 책임)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윤두현 의원 대표 발의)

---

4) 한국법제연구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 연구 19-14-④, 2019.10.31.,90면.

〈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주요 법안

제안일자	법안명(의안번호, 대표발의자)
’23.07.0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048, 이원택 의원)
’23.07.1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242, 윤두현 의원)
’23.07.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388, 권명호 의원)
’23.06.16.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707, 이학영 의원)
’21.08.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112104, 유동수 의원)
’21.06.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111109, 이정문 의원)
’21.06.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110744, 김병욱 의원)
’21.05.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110377, 전재수 의원)
’21.03.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109213, 윤관석 의원)
’20.12.1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106369, 전혜숙 의원)

□ (우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를 통한 플랫폼사업자의 사전 의무 부과 및 책임 강화가 플랫폼 사업운영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입점업체, 소비자, 시장 전반에 의

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플랫폼사업자)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강화는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매출액이나 중개거래액은 크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규제 시행 이후 즉각적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플랫폼 사업운영에 드는 **관리비용 상승은 약 124.7억 원**으로 추정(제3자 배상책임보험료 11.1억 원, 모조품 단속 인건비 29.9억 원, 입점 기준 강화에 따른 인건비 35.9억 원, 소비자 피해 연대 책임 담보를 위한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 이용 47.8억 원 상승)[5)]

○ (입점 업체) 플랫폼 관리비용 상승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비용경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검증된 소상공인 또는 기성기업 위주로 입점을 제한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이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장벽을 높이고 결국, 소상공인의 수익성 약화 및 미래성장기회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장벽 강화로 인한 신규 입점 업체 및 소상공인의 성장기회 상실은 **총 31조 원의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추정(거래액 13.4조 원, 생산 18.1조 원 감소), **22만 명의 고용 감소** 야기[6)]

---

5)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 플랫폼 규제 정책, 2023-1호, 2023.1.11. ; 유병준, 전성민, 강형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발표자료], (사)한국벤처창업학회·(사)한국법정책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2021.8.26.

6)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 플랫폼 규제 정책, 2023-1호, 2023.1.11. ; 유병준, 전성민, 강형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발표자료], (사)한국벤처창업학회·(사)한국법정책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2021.8.26.

○ (소비자) 플랫폼사업자의 관리비용이 상승하고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상품 가격 인상 및 상품 선택 제한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플랫폼사업자의 입점 업체 관리비용의 증가, 매출 감소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그로 인한 상품·서비스 가격 인상은 **약 1.1조 원~2.2조 원 가량의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7)]

○ (시장 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연대배상 책임 등을 부과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등 플랫폼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일부 자금력이 풍부한 플랫폼만이 살아남는 시장의 양극화 발생 우려

2 개선방안

□ **온라인 거래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면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온라인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법령을 보완하거나 플랫폼 업계 주도의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이 필요**

□ **특히, 강력한 규제 도입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에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경우, 그로 인한 시장피해가 규제이익보다 클 염려가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혁신과 자정작용을 통한**

7)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 플랫폼 규제 정책, 2023-1호, 2023.1.11. ; 유병준, 전성민, 강형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발표자료], (사)한국벤처창업학회·(사)한국법정책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2021.8.26.

자율규제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하여 일률적인 자율규제의 거버넌스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함**

○ 자율규제의 장점은 해당 시장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지닌 시장행위자 스스로가 규제의 방식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 발휘될 수 있음

○ 일률적인 자율규제의 방식을 공적 주체가 개입하여 도입하는 것은 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음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관리 방향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은 그 사례와 양상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플랫폼 경제 초기에는 주로 핀테크, 공유숙박업, 운송업 등과 같이 정부 규제가 비교적 강하게 작동하는 보호 산업에서 그 사례가 많이 목격되었음

○ 그러나 2020년 이후로는 의료, 법률, 교육 등 전문직이 종사하는 산업까지 갈등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갈등사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 특히, 전문직 등 직역 단체의 법적 권한 남용과 자의적인 플랫폼 제재 행위가 이어지면서 분야별 플랫폼 산업이 위축되고 있음

○ 플랫폼을 둘러싼 산업갈등은 경제주체(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조정이 쉽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 외에 사상과 가치의 대립과 같은 비경제적 측면의 갈등 요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8)]

□ 지난 역사 속에서도 산업변동의 과정에서 갈등은 항상 발생했으며, 산업갈등에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모두 존재

○ 산업갈등을 적절히 관리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유발해 정체된

8) 곽규태,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이성엽 외), 박영사, 341-371, 2022.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긍정적 효과

○ 그러나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의 확산과 교착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을 방해하고 새로운 혁신적 비즈니스의 출현을 제한하고 있어[9],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에 부정적 효과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순기능과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갈등 주체들 간의 감정이나 논쟁, 투쟁이 격화될 경우, 갈등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증가

○ 플랫폼 비즈니스를 둘러싼 갈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시스템에 개입하며 많은 문제를 낳고, 시대적 과제인 디지털 전환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비시장(non-market) 경쟁을 야기해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킴[10]

○ OECD 회원국의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국가별 1인당 GDP는 약 7%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11]

○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갈등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체계적인 갈등 관리가 요구됨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대연합, 온라인 플랫폼정책포럼, 2020년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7, 2020.
10) 곽규태,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이성엽 외(편), 플랫폼의 법과 정책, 박영사, 341-371, 2022.
11) 박준, 이용기, 이동원,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2 개선방안

□ 플랫폼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산업갈등(신·구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업갈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함

○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의 속성 및 갈등관리 양상을 구조화하고 갈등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 원칙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섬세한 접근과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많은 영역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업종이나 이해관계 등 특정 이슈에 치중되지 않고 플랫폼 갈등 객관화를 위한 유형화 프레임워크를 마련

□ 플랫폼과 기존산업의 비즈니스 갈등 양상과 관리방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4분면 기법을 활용한 유형화를 시도[12)]

○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의 갈등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플랫폼의 통제력과 분쟁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도출

- (Ⅰ유형: 에어비앤비, 벤고시닷컴) 통제력이 낮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사업영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갈등관리를 위해 플랫폼-이해당사자 간 우선 협의를 공적기관에서 중재하며 지원할 필요

- (Ⅱ유형: 레드핀, 토스) 통제력이 높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12)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과 산업갈등-쟁점과 과제, 2023.

사업영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갈등관리를 위해 공적기관 주도로 중재 및 갈등관리를 이끌어갈 필요

- (Ⅲ유형: 구글뉴스, 도어대시) 통제력이 낮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이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갈등관리를 위해 플랫폼-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익 배분의 방법/기준을 결정해야 함

- (Ⅳ영역: 스포티파이, 왓챠) 통제력이 높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이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갈등관리를 위해 플랫폼-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그림> 플랫폼 비즈니스 갈등 양상에 중점을 둔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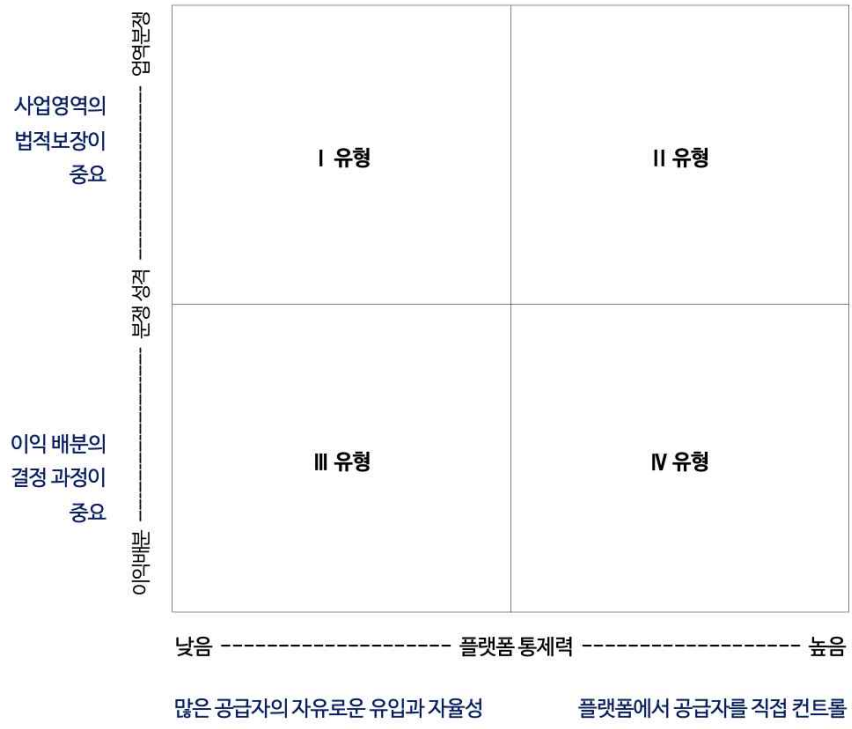

○ 이어서 플랫폼 비즈니스 갈등 조정 양상을 체계화하기 위해 갈등

조정 주체와 갈등의 복합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도출

- (Ⅰ유형: 아마존) 갈등에 얽힌 이해당사자가 매우 많고, 갈등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경우, 갈등의 이해당사자가 매우 다양하고 공적기관보다 갈등 당사자들에 의해 타협적으로 갈등이 조정되는 특성 → 공적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해 기업이 문제를 빠르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 대응 전략

- (Ⅱ유형: 에어비앤비, 토스, 타다) 갈등에 얽힌 이해당사자가 매우 많고, 공적기관이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갈등 사안에 매우 경쟁적으로 대응하는 경향 → 공적기관의 갈등 조정 방식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에 따라 문제 해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공적기관의 개입과 조정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

- (Ⅲ유형: 도어대시, 스포티파이) 갈등에 얽힌 이해당사자가 다소 많고, 이해당사자와 공적기관이 함께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갈등 사안에 대해 타협적으로 대응하는 경향 → 이익 배분이 주요 갈등 이슈인 경우가 많고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때 갈등이 쉽게 격화될 수 있으므로 공적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

- (Ⅳ유형: 레볼루트, 레드핀) 갈등에 얽힌 이해당사자가 적고, 공적기관이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갈등 사안에 대해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경향 → 공적기관의 주도적 조정 역할이 효과적인 영역

〈그림〉 플랫폼 비즈니스 갈등조정 양상에 중점을 둔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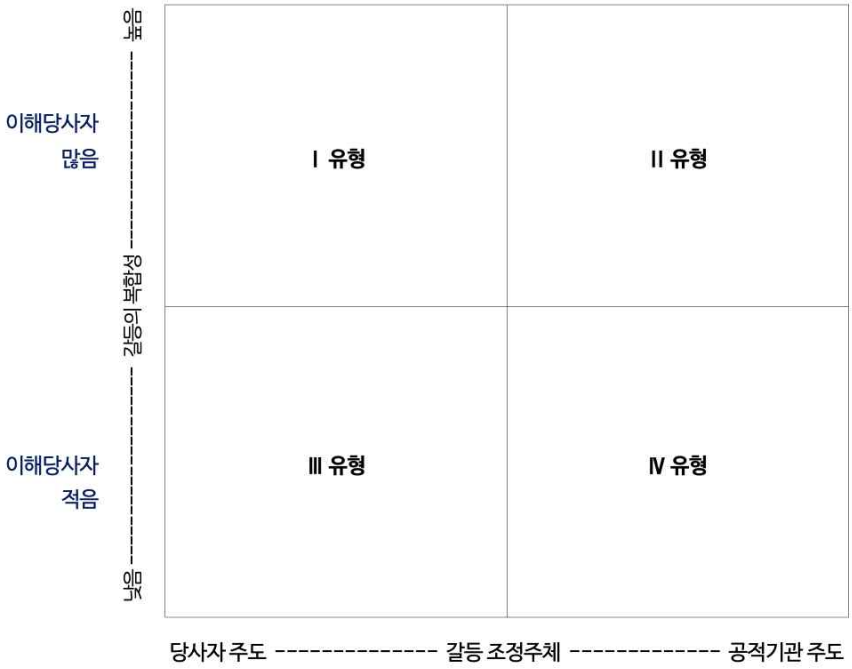

□ **효과적인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갈등관리 방식과 함께, 공적기관의 적절한 참여 결정이 필수적임**

○ 갈등해결을 위해 시도한 정책변화가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주요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의 방식이 중요함

○ 우리 사회와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이에 기반해 갈등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공론화 과정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음

[자율규제]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자율규제 관련 법령 현황) 이용자 보호 분야의 자율규제는 자율규제, 자율규약, 자율심의, 분쟁 조정, 지침 등의 형태로 규정됨

〈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의 자율규제 관련 법령

구분	자율규제 관련 법령
사업자· 사업자단체 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자율규제 단체 지원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제3항
자율규제 관련 법정 제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정보보호산업 이용자보호지침,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자율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업계(자율준칙 제·개정 등 활동,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공개) - 정부(자율규제 활동 관련 지원시책 마련, 활동 지원), - 전문가·이해관계자(자율규제 활동 관련 의견 제시 및 논의 참여, 외부 평가) (공정거래법 개정)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분쟁 조정 방안 및 표준계약서, 소비자 피해 신속 대응방안 등을 규정하는 업종·분야별 자율규약 마련, 플랫폼사업자의 자율규제 운영 성과 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

*출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 자율규제 연구(2023)

□ **플랫폼 업계에서도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문제를 인식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책 마련 및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거나 검토하고 있음**

○ 플랫폼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경쟁과 생존을 위해서는 판매자와 상생,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한 거래환경이 필수적임

□ **(B2C 자율규제 현황 1) 일부 플랫폼에서는 자사 오픈마켓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

○ 판매자가 결함·불법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사업자는 상품 회수부터 환불, 폐기까지 소비자에게 선보상 조치를 취하고 이후 판매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

○ 판매자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품 이미지 활용을 플랫폼사업자에게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

□ **(B2C 자율규제 현황 2)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10개사(지마켓, 11번가, 네이버, 롯데온, 카카오, 쿠팡, 무신사,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티몬)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 참여해 공정한 자율시장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

○ 오픈마켓 입점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자 간 약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계약사항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마련

○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예정

○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를 위해 플랫폼별 상황에 맞게 수수료 정책을 내놓거나, 중소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

□ **(C2C 자율규제 현황) 일부 C2C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운영정책 및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분쟁신고 접수, 분쟁내용 검토, 검토결과 안내, 분쟁조정 신청, 이용자 간 협의, 조정안 제시에 이르는 분쟁해결절차 프로세스를 구축

- 이용자는 앱 상에서 손쉽게 거래/환불 분쟁 신고 가능
- 운영정책 상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플랫폼에서도 운영정책에 기반해 분쟁내용을 검토
- 플랫폼에서 분쟁내용 검토 후에 분쟁내용이 사기로 정황이 파악되는 경우 신고인 이용자에게 수사기관을 안내하고, 그 외 경우에는 이용자 간 1차 협의를 권고
- 피신고인 이용자가 1차 협의안에 대한 대응이 없을 시 이용 제한 및 2차 협의 권고 진행
- 분쟁해결절차 각 단계에서 이용자 간 협의를 돕는 장치 마련

○ 나아가 향후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수립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

- 분쟁해결절차를 거친 실제 사례로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등 분쟁 예방과 해소 노력 확대 예정

2 개선방안

□ **온라인 거래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면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업계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같은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혁신과 자정작용의 효과를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규제 자체보다는 자율규제 효과를 제한하는 부분을 입법·행정적으로 해소할 필요 있음**

○ **(사례 1: 온라인 플랫폼 거래 사기 방지)** 온라인 플랫폼 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통신판매사기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자세한 개선(안)은 부록 P.64 참조)

-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 규모는 2,600억 원 이상, 검거 건수는 8만 4천 건 이상 집계되었음

- 그러나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거,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좌를 활용한 피해 의심거래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여도 손을 쓸 수 없고,** 계좌지급정지까지 통상 7~10일이 소요되어* 그 사

이 **문제가 된 계좌가 범행에 계속 동원되는 등 즉각적인 피해 방지의 한계가 발생**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임시조치(송금지연, 일시정지)는 피해자 본인, 금융 감독원, 계좌 도용된 사람이 본인 확인을 한 경우에만 허용되어,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경찰 사건 접수 →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절차에 통상 7~10일이 소요됨

○ **(사례 2: 온라인 플랫폼 리뷰 게시중단(임시조치)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상에 게시되는 리뷰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자세한 개선(안)은 부록 p.67 참조)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여야 하는데*,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에 대해 입점업체 등이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상 의무에 따라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했음에도 온라인 플랫폼이 고의적으로 해당 리뷰를 삭제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권리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포털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됨

- 그러나 ISO, OECD 권고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리뷰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스타트업,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역시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리뷰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상충하고 있음

CP-ISP 간 망 이용계약 논란으로 인한 분쟁해결 방안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 **(망 이용계약 논란 배경) 콘텐츠 제공사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의 네트워크 인프라 소비행태 변화 및 생태계 내 CP의 영향력 변화 발생**

○ (동영상 중심 이용행태) 통신기술의 발달로 텍스트 기반 웹서핑 중심에서 동영상 등 고용량 데이터 콘텐츠 중심으로 소비 행태 변화*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은 '08년 10,174PB에서 4년만인 '12년에 43,570으로 4배 이상 증가

○ (전송품질 중요도 증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CP의 수익에 중요한 역할

○ (대규모 트래픽 점유 CP 등장) 동영상 및 플랫폼의 성장으로 대형 CP가 대규모 트래픽을 점유

- '20년 국내 트래픽 점유율: 구글 25.9%, 넷플릭스 4.8%, 페이스북 3.2%, 네이버 1.8%(과기정통부)

□ **(EU의 망 관련 정책 동향) EU 소속 국가에 기반을 둔 지배적인 CP 사업자가 없는 시장 상황으로 인해, '공정기여' 개념을 바탕으로 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중**

○ 2022년 1월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문"[13] 초안을 발표

13) 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

하면서 망 인프라 비용 관련 '공정기여'가 처음으로 언급됨

- EU는 **EU 소속 국가에 기반을 둔 지배적인 CP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주로 ISP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의 정책이 중점적인 특징**이 있으며, 특히 '공정기여(Fair Contribution)' 개념이 대두되면서 CP가 망 서비스 및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EC(European Council)는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망이용료와 관련한 입법 초안"[14]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400여 건의 의견에 대해 검토 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

○ 또한 EC는 지난 6월 13일 CP의 망 공정기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입법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있음

- 스페인 최대 통신사인 텔레포니카를 비롯한 EU의 주요 대형 통신사는 입법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제시 중이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간접적으로 통신사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15]

□ (미국의 망 관련 정책 동향)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을 통한 조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테크 중심의 주요 CP들이 망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정책 추진중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따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빅테크 기업이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14) The future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and infrastructure

15)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ody of European Regulato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는 CP가 ISP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서 2022년 11월 예비검토보고서를 통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했음

차원에서, 2021년 7월 상원에서 “안정적 기여를 통한 합리적 인터넷요금을 만들기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법안”[16]이 발의되었음

- 유선 전화 서비스 이용 감소에 따라 기존 보편적 서비스 기금[17]의 조달 방식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금 관련 기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위 법안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Internet edge provider’의 기여를 통해 보편 기금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에 검토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FCC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지지의견을 표명하였고, 2022년 8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

□ **(국내 망 이용계약 논란 쟁점) CP와 ISP 간 망 이용계약 관련 논란은 망 이용료 개념, 망 중립성, 상호접속 등 여러 쟁점과 얽혀있음**

○ (망 이용료 개념에 대한 시각 차이) 국내의 경우, 망 이용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별로 망 이용료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

- CP의 경우, 접속(access)와 전송(deliver)의 개념을 구분하여 망 이용료를 전송료로 인식하여 직접적으로 접속한 곳에만 망 이용료를 내면 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반면, ISP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접속은 전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서로 분리할 수

16) FAIR Contributions Act : Funding Affordable Internet with Reliable Contributions Act
17) Universal Service Fund, USF. 막대한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드는 농촌 지역, 학교 및 도서관, 농촌 의료 시설, 원격 의료 서비스 및 저소득층 미국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비용을 지원하는 기금

없고,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전송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야한다고 주장

○ (망 이용료와 망 중립성 간 관계에 대한 시각 차이) 일부 CP의 경우, 트래픽에 따라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용 지불을 전제로 한 전송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기본 원리인 망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하는 반면, ISP의 경우, 망중립성 원칙은 트래픽이나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지 무상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

○ (상호접속과 망 이용료의 관계에 대한 시각 차이) 일부 CP의 경우, '16년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정산제도가 트래픽에 따른 종량제 방식의 정산제도를 채택한 뒤, 이러한 방식이 소매시장까지 전이되어 망 이용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ISP의 경우 상호접속은 도매시장을 규율하는 제도이며 소매시장에 해당하는 망 이용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

□ **(국내 망 이용계약 관련 입법 현황) 특히, 망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기업 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온 망 이용 계약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 시도**

○ 국내의 경우, 망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EU과 미국과 달리 **CP와 ISP 간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방안이 발의되어있는 상태**

- EU, 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넷플릭스-SKB" 소송사례나 일부 국내 CP의 망 이용계약 역차별 주장 등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이슈가 시장에서 제기되면서 정책논의가 시작됨

○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망 이용·제공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실태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함

〈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대표발의	발의시기	주요 내용
전혜숙 의원	’20.12.	불합리·차별적 조건 제한 부과 금지(부당한 망 사용료 부과 등), 계약체결 부당 거부, 계약 불이행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 방통위에 망 이용 현황 파악 조사 권한 부여
김영식 의원	’21.7.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구 금지
김상희 의원	’21.11.	대형 기간·부가통신사업자(지정) 망 이용 계약 체결 및 망 사용료 지불 근거 마련, 준수사항(상대방 이익 부당하게 제한 금지, 기체결 계약 조건 대비 부당 차별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등) 규정, 과기부에 망 이용 계약 현황 파악 조사 권한 부여
이원욱 의원	’21.11.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 마련, 불공정 계약 체결 금지, 준수사항(상대방 이익 부당하게 제한 금지, 기체결 계약 조건 대비 부당 차별 금지, 불합리한 계약 지연 금지 등) 규정
양정숙 의원	’21.12.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 마련, 망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 명시,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 및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
박성중 의원	’22.4.	대형 CP에 망 이용 계약 의무 부과, 준수사항(차별적 내용 포함 금지, 상대방 권리·이익 부당 침해 금지 등)규정
윤영찬 의원	’22.9.	기간통신사업자 및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지정), 불합리·차별적 조건·제한 부과 금지, 계약체결 부당 지연·거부 금지 등

*출처: 코스포 발표자료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2022)

□ (법안 검토)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 사업자(CP) 간 역차별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

○ 우려 1 : 사적 계약의 국가 의무화 논란

-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는 계약체결 및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여 강제하는 것인바, 이는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도 맞지 않음
- 따라서, 최소한 CP-ISP 사업자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규제 입법을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 제2항은 ISP로 하여금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적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제한된 인허가라는 진입장벽을 통해 보호받는 ISP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임. 또한 ISP가 인터넷 시장에서 최종 이용자(end-users)에 대한 문지기(gate keeper)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우려 2: CP의 협상력 약화, 통신사 과점체계 고착

- ISP는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인터넷망을 통해 트래픽을 전달하고 망 품질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는 한편, 그에 대한 대가는 이미 국내 CP가 사업자 간 망 이용계약을 통해 지불하고 있음
- 이러한 의무의 선후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ISP 관점에서의 세부 계약조건이 입법될 경우, **스타트업 등 국내 CP의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고, ISP 간 건강한 경쟁이 사라진 통신사 과점체계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우리 판례(2019누57017)는 페이스북-방송통신위원회 사건에서,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 및 통제하여야 하는 영역임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음

** 이용계약 강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네트워크 고도화나 이용자(개인 및 CP)를 위해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고, ISP가 망 혼잡을 기술적으로 개선할 유인이 사라지는 역효과 발생 우려. 미국의 경우, 2014년경 컴캐스트 등 일부 대형 ISP들이 특정 CP 트래픽을 지연시켜 이용계약을 강제한 바 있고, 이후 미 정부는 망중립성 규제를 강화하고 ISP가 CP에게 과금하는 사례에 대해 연방정부가 개별 심사를 강화하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음

○ **우려 3: 국내 CP의 규제 부담 가중**

-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실시는 **CP에게 또 다른 불필요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중복조사를 면제하는 등 적적한 조치가 필요함

- 특히, 통신망 이용 관련 자료는 통신사가 집중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점,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전송량 및 경로 등의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 기관의 자료 수집 대상은 통신사로 한정할 필요 있음

2 개선방안

□ **망 이용료 등 인터넷 통신에 관련한 논의 방향은 '망 공공성' 의 원칙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함**

○ 오늘날 인터넷 이용 등 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성의 성격이 강하고, 오늘날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연계되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임

- 산업화 시대에 고속도로와 물류망이 제조업 중심의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낸 것처럼, 데이터와 플랫폼이 중심인 디지털경제시대에는 데이터 고속도로인 인터넷 망이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가 되었음

○ 다만, 아무리 잘 구축된 망일지라도 이를 사용하는 데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인터넷 생태계가 번영할 수 없음

- CP의 사업 유지의 어려움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림. 특히, 스타트업과 같이 자금이 부족한 중소 CP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음

- 결국, 소비자에게도 콘텐츠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는바, 소비자는 이미 국제적으로 비싼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이중 비용 부담의 위험에 놓일 우려 있음

○ 따라서 망 비용을 낮춰 민간의 뛰어난 기업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를 질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논란이 되는 망 이용계약 이슈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성급한 입법을 시도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논의가 필요**

□ **설령, 현행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망 이용대가 계약에 있어 스타트업 등 중소 CP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은 물론, ISP가 네트워크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CP는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네트워크 운용 현황 등에 관해 정보비대칭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로부터 배타적 사업권을 인정받는 ISP가 네트워크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책임 규정이 필요

○ 특히, CP와 ISP 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정보 왜곡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망 이용료 산정 기준과 평균 단가 등과 같은 정보 제공,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실효성 있는 공개 및 고지 의무 부가 필요

□ **단, 적정 망 이용료 등에 대한 논의 및 면밀한 조사, 망 이용계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 시장 내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식별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망 이용료 관련 핵심 문제 중 하나로 현재 망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음. 정당한 망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

○ 현재 국내 스타트업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인터넷 기업에 비해 높은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음

- 실제 KT와 미국 통신사 AT&T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KT의 망 비용은 AT&T에 견줘 20배 이상 높은('21년 기준).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연구보고서('21년 12월)에 따르면, 국내 트랜짓 비용은 미국의 10배,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음('21년 Q3 트랜짓 비용: 서울 2.27$, 미국 LA 0.29$, 일본 도쿄 1.04$)

- 통신사들은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한편, 국

내 스타트업들은 값비싼 망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통신 3사 영업이익 2022년: SKT 1조 6,121억 원, KT 1조 6,901억 원, LG U+ 1조 813억 원

○ 특히 ISP가 '탈통신화'를 지향하며 OTT, 메타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CP들과 직접 경쟁하는 사업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망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경제적 손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임

○ 독일, 네덜란드 등 규제기관에서 수행한 peering 시장의 분석 사례 등을 참고 필요

규제샌드박스 제도 스타트업 고충 완화 요청

1 현황 및 문제점

□ **(실증특례 기간 연장) 실증특례 최대기간 4년(2년+2년) 도달로 인한 실증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추가 연장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선 단순 기간 연장보다 실질 허가가 필요함**

○ (정식사업 영위 필요) 실증특례는 규제법령을 정비하기 전 일정 조건 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실증사업으로, 해당 기간 연장만으로는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사업적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정부는 실증사업 기간 종료 예정인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실증사업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
- 기업에게 실증사업이란 특정 조건 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해당 기간 연장은 사업적 성과보다 준비 기간 연장에 가까움
- 규제샌드박스 제도 내 장기간 생존이 어려운 중소기업 비중이 65%[18]로, 길어진 준비 기간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최근 특례 기한이 종료된 경우 심의를 통해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추세임

□ **(신청기준 및 소요기간 불확실) 기업 입장에서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어느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제도별 소요기간은 어떠한지 파악하기 어려움**

18) 규제샌드박스 백서(2022)

○ (기준 모호) 기업의 제도 선택에 따라 지원 혜택, 승인 결과, 소요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업에선 제도 간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움

- ICT 융합은 '정보통신기술 결합 서비스', 산업융합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지만 둘의 구분 기준은 모호
-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른 부처 선택의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처 간 이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부재
- 현실적으로 접수 이후 운영 단계에서 타 샌드박스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며, 유사 실증사업이 운영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교류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
- 실제로 유사한 비즈니스가 여러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별도의 과제로 승인되어 진행되는 사례 존재

〈표〉 규제 샌드박스제도 내 주요 유사 비즈니스 사례

과제명[19]	규제개선 내용	이용 제도	서비스명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서비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여 렌트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사업을 허용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ICT 융합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산업융합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공유주방 정의/업종 신설 및 위생기준 마련 * 식품위생법	ICT융합	공유주방 서비스
		산업융합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 도로교통법	산업융합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전남)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출처 : 스타트업코리아2022 정책제안발표(아산나눔재단 외)

○ (기간규정 불명확) 진행 단계별 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여, 기업에선 제도 진행 시 소요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움

- 단계별로 기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진행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가 발생 가능

- 기업 입장에서 제도 신청 시 승인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지 알기 어려워, 실증 준비에 대한 부담 발생

- 실제로 과제별 소요기간 상이하며, 장기간 대기 사례 또한 존재

※ 최근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총90일 이내로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함

〈표〉 규제부처의 선행 계획 여부에 따른 소요기간 차이 사례

구분	신청-승인 소요기간	관련 내용
A 기업	8개월	규제부처에서 해당 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인 및 법령 개정까지 원활히 진행 * 전기차 보급 기반 구축 실증사업 등
B 기업	3년 5개월	이해관계자 및 규제부처의 반대로 심의위원회 상정이 계속 지연되어 3년 이상 기간 소요

*출처 : 스타트업코리아2022 정책제안발표(아산나눔재단 외)

□ (부가조건 및 안전성 입증 부담) 기업은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부가조건과 불명확한 안전성 입증 요건으로 인해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음

○ (부가조건의 사업성 저해) 실증 사업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부

19) 2021년 12월말 기준 규제샌드박스 백서 내 규제개선 완료 과제 중 유사 비즈니스 과제 확인

가조건이 필요 이상으로 더해지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 국내 신생기업 생존율이 '20년 기준 1년 차 64.8%, 5년 차 33.8%임을 감안하면, 2~4년의 실증 특례기간은 스타트업의 생존을 좌우

- 지나친 부가조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시 실증 특례기간 동안 기업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어, 부가조건 설정 시 기업의 사업성 고려 필요

- 지원기관에서 부가조건에 대해 기업 입장을 변호하고 있지만, 규제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이 실증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경우 발생

〈표〉 부가조건으로 인한 사업성 저해 사례

실 거래 서류 확인, 거래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과 수익성 확보 어려움
• (실증특례 승인 부가조건) 실 거래 확인을 통한 대금 지급, 일정 금액 이내의 월간, 연간 거래한도 설정 등 16가지 부가조건 설정으로 사업성 저하 • (실증기간 연장 부가조건) 월평균 30 만원 이상 거래하는 고객의 사업자 등록 의무 통지 등 2가지 부가조건 추가로 사업성이 더욱 제한됨

*출처 : 스타트업코리아2022 정책제안발표(아산나눔재단 외)

○ (안정성 입증 요건 불명확) 기업이 실증사업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안전성이란 개념이 광범위하고 막연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기준이 다르게 요구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혁신 비즈니스 특성상 안전성 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무리가 있어, 실증 완료 후 기업에서 제시한 안전성 입증 결과에 대해 부처가 사후 평가하는 경우가 다수

- 안전성 요건에 이슈가 있더라도 대부분 사업 기획이나 진행 전에 기업에게 알려지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증

- 법령상 실증 방법에 따른 안전성 입증에 대한 규정 없이 막연한 개념으로 존재하는 '안전성'에 대한 기준 명확화 필요

- 실제로 기업에서 자체적 기준에 따라 안전성 입증을 준비해왔는데, 실증 종료 시점이 되어서야 기준이 추가되는 경우 존재

〈표〉 실증 후에도 규제 개선 교착 발생 사례

규제 개선에 대한 세부 협의 없이 실증 진행 후, 규제 개선 교착 발생
• (세부 협의 부재) R&D 계획 단계에서 기업과 규제부처간 규제 해소 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협의되지 않음 • (규제개선 교착) 실증 기간 종류 후에도 규제 개선을 위한 안전성 입증에 대한 견해 불일치로, 기업은 기존 규제가 아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계획도 고려

*출처 : 스타트업코리아2022 정책제안발표(아산나눔재단 외)

2 개선방안

□ **(기업의 제도 진입-종료 개선) 기업의 제도 진입 시 불명확한 기한 규정 및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증 운영/종료 시 부가조건 및 안전성 입증에 대한 부담 경감 필요함**

○ **(진입 단계 개선) 제도 진행 단계별로 기한 규정을 추가하고, 기업 평가 기준을 명확화하여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함

- 단계별 소요기한을 상세히 규정하고 실제 기업들의 단계별 소요일자를 공개 시, 기업에서 사업 일정 수립 시 반영 가능

- 진행 단계별 기업 평가 기준을 명확화하고 사례 중심으로 신청서 작성 및 심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시, 기업에서 최적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선택 및 원활한 사전준비 가능

○ (운영/종료 단계 개선) 부가조건 설정 시 기업에게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정부 차원의 안전성 입증 요건 제시 필요함

- 실증 전 부가조건 설정 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수익성 보장

- 기업에서 부가조건 설정 - 실증 사업 - 수익성 확보로 이어지는 연결 관계나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시, 이에 대한 전문가 지원 제공 필요

- 불가피한 부가조건으로 인해 기업의 사업성 제한 시, 투자 유치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실증 진행 및 종료 과정에서 불명확한 안전성 입증 요건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증 운영 2년 내 안전성 요건 확정 필요

- 정부에서 안전성 요건 확정시 유사 실증을 진행하는 기업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전문 기관의 지원 동반 필요

□ **(지역 단위 비즈니스 우선 추진 절차 마련) 기존 산업계 등이 제기하는 혁신 비즈니스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 문제 등으로 혁신 비즈니스 도입 지연됨**

○ 혁신 비즈니스 도입으로 우려되는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지역 단위 규모로 축소해 관리 경험 확보

- ‘지역 추진’ 절차 도입에서 지역 제한 조건 외 별도의 규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 추진 절차 필요

- 전국 단위 임시허가나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증특례 종료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만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추진 허용

○ 사업성 및 효과성을 분석해 ‘지역 추진’ 대상 지역 선정 시 해당 지역에서 혁신 비즈니스 사업성이 확보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혁신 비즈니스를 전개해야 이점이 있는지 효과성 분석이 필요함

- ‘지역 추진’의 지역 단위는 광역시·도(또는 전국단위) 규모로 설정

- ‘지역 추진’ 대상 지역의 사업 도입 효과성 분석은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진행

벤처기업 지원 법률 상시화

1 현황 및 문제점

□ '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은 두 차례의 일몰 연장을 거쳤으며, **'27년에 「벤처특별법」 일몰시점 도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법률 제5381호]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 8. 3., 2016. 12. 2.>

* 초기 벤처생태계 조성 및 벤처기업 육성정책 추진 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특별법 체계의 한시법으로 제정

○ (제도적 의의) 기존 법률로는 벤처기업 및 생태계 구성요소의 특성으로부터 유발되는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 「벤처특별법」은 유관 법률 143개 조항 인용하여 **전방위적 벤처기업 정책 추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벤처특별법 주요 내용) ①'벤처기업' 정의 및 요건 ②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의무 부여(중기부) ③기업활동 ④창업 인프라 등 규정

□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벤처특별법」 상시화 필요

○ 벤처기업법 일몰규정은 벤처기업의 안정적·지속적 육성에 필요한 동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음

- (단기) 벤처기업 정의 및 요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기업활동 등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어 **직접적 정책 대상인 벤처기업들이 경영애로 직면***(세제혜택, 입지, M&A, 인력 등)

- (장기)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벤처 생태계 구성요소와 제반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장기적 정책 동력** 상실**

* 벤처기업법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등

** 벤처기업법 제3조의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개선방안

□ **안정적인 벤처기업 지원 정책 및 제도 구축을 위해 「벤처특별법」의 상시화 전환이 필요**

○ (제정목적) 「벤처특별법」은 단순 유인정책이 아니라 벤처 시장 및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특징이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 및 제도화 필요**

○ (법현실화) 「벤처특별법」 일몰규정은, 90년대 불확실성이 컸던 벤처산업 극초기에 정책의 한시성 및 특단의 조치라는 관점에서 제정됨
→ **대내외적 벤처생태계 환경 및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벤처투자 지원법 분리) '17년 2차 일몰 시점에도 상기 동일한 이유

로 상시화 움직임 있었으나, 당시 법률 내 '벤처기업'과 '벤처투자' 지원을 분리하기 위한 법제정 관련 논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일몰 재연장

→ **'20년「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벤처투자 지원법이 분리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벤처특별법」 또한 일몰 연장이 아닌 상시화를 통해 안정적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중기부) 벤처투자법과 분리 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으로 안정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목표, 벤처기업법의 일몰 기한을 없애면서 특별법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부터, 벤처기업기본법 전면 개편까지 다양한 방안 거론

□ **(검토 방향) 부칙, 법률 제5381호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삭제 등을 통한 상시화 전환 고려**

※ [부록] 규제 개선 과제 모음

〈 규제 개선 과제 〉

▲ 리걸테크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 49
▲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및 약 전달 허용 ····· 54
▲ 온라인 통신판매사기행위 피해 구제 ····· 64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리뷰 규제 ····· 67
▲ 디지털 도어록 배터리 규제 ····· 71
▲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요건 ····· 76

과제	리걸테크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규제 소관부서	법무부
비고	변호사단체의 부당 제재 사례

□ 건의내용

○ **(규제내용)** 현행법의 취지 및 규정상 변호사 광고 매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온라인 *법률플랫폼 운영 가능**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 그러나 **변호사단체의 부당한 제재행위**로 인해 국내 **리걸테크 산업 성장이 장기간 침체된 상태임.
- 정부 기관의 판단도 무시하며 리걸테크산업의 발달을 가로막는 협회의 초법적 규제권한 개선 필요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서비스 산업.

※ (해외사례)
- 일본은 변호사 광고 사이트를 유료로 제공하고, 변호사가 그 안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사무 주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허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미국·독일·일본 등의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호사 계약에 따른 보수를 분배하는 형태가 아닌 객관적인 방식으로 변호사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고 있음.
- 2023년 8월 전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는 7,461곳, 투자 규모는 118억 달러에 달하며, 특히 그중 35억 달러가 최근 2년간 이뤄지는 등 투자가 활발히 이뤄짐.(Tracxn, 2023)

○ **(문제점)**

- 변호사단체는 200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법률서비스나 법률플랫폼 운영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여 다수의 온라인 법률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거나 위축됨.

※ 로톡의 경우, 변호사단체는 2015년, 2016년, 2020년 세 차례 고소고발을 했으며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

- 대한변협은 2021.5.3. '변호사 광고에 관한 내부 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특정 플랫폼의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실제 123명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의결해 현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중.

※ 대한변협은 네이버, 구글 등의 변호사광고는 허용, 법률플랫폼 광고는 불허함.

-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법무부**도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변협의 광고규정 및 윤리장전 개정행위, 개정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힘.
- 정부는 2007년 변호사 광고범위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정취지를 밝힘.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②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직접 규정해야함.
  ③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가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23.2월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원 부과 처분** 내림.
- '23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검토 착수**.

ㅇ **(개선방안)**

-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모두 사건 수임과 연계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광고는 허용하고 있음.

-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의사 등 타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변호사법도 **변호사 광고의 제한사항에 대한 지정 권한을 사업자단체가 아닌 법무부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 개정 필요(변호사법).**	
관련법규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2항 7호 및 동조 제3항, 제4항, 제113조(벌칙)

붙임1 관련 법령

□ 「변호사법」 (법무부)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대한변호사협회)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2.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3.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4.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수임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적·비교·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제공하는 행위
5.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
6.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협회 및 지방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행위

붙임2 현황

○ 2014년 로앤컴퍼니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출시하여 변호사들로부터 일정액의 광고료를 받고 변호사 정보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를 변호사 중개·알선 행위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해당 단체들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음

○ 로톡서비스는 합법성을 인정받으며 약 4천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였으나, **2021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자 회원 변호사들이 줄줄이 탈퇴해 1700명 대로 급감, 로톡은 광고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아 **구조조정에 들어감**

○ 2022년 5월, **헌법재판소**는 법률플랫폼을 금지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일부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에 대해 다른 해석을 주장하며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행위를 지속함**

○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으며, 피징계 변호사 123명 전원은 법무부에 이의신청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2년 12월 최초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나, **7개월 여가 지난 2023년 7월 20일에야 1차 징계위**를, 이어 **9월 6일에 2차 징계위 개최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함**

○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 탈퇴 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림**

○ 2023년 5월 국회의 여야 공동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제5호 법안으로 변호사 광고의 제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소영 의원)」을 발의**함

과제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및 약 전달 허용
규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비고	의사협회 및 약사협회와 갈등 사례

□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

○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가 **종료**되며,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제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6.1.~)

*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허용 가능, 의료법에서는 금지

○ **의사 판단**하에 **질병 종류·거주지·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하였던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와 달리,

- **제한적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일부 국민**만 **비대면진료**를 **이용 가능**하도록 **대폭 규제**

- 특히 **재진 환자**를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정의**하여, **사실상 대다수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을 **금지**

○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의 **약 배송 역시 사실상 금지**되며,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

* 보건복지부는 의협, 약협, 병협, 산업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미진한 상황

< 한시적 비대면진료 vs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제도명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원급 환자 대상	초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환자** (초진, 재진에 따른 제한 없음)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감염병 확진 환자, 야간·휴일 소아환자(처방은 금지)
	재진		동일 병원에서, 동일 질환으로, 30일 내, 1회 이상, 대면 진료받은 환자 (만성질환자는 1년 내)
약 배송 (재택 수령)		환자-약사 협의 시 가능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만 가능

□ 입법 추진 현황

○ **'23년 8월** 기준, 국회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대다수 법안**이 **대상 환**자를 **제한적**으로 **설정**

* 신현영 의원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포함하면 총 6건

○ **'23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상시화 의료법 개정안' 논의 시작**했으나, **7개월째 계류** 중이며, **'23년 6월 축조심의 진행** 결과,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준**으로 **법제화 유력**

* 축조심의 내용에 따르면,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또는 교정시설 수용자 등으로 제한하고, 재진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제한

< 비대면 진료 입법안 발의 현황 >

구분	강병원의원	최혜영의원	이종성의원	신현영의원	김성원의원
대상 환자	만성질환자 (복지부령 위임)	만성질환자, 섬·벽지 환자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환자 등	모든 환자	모든 환자 (복지부령 위임)
초·재진 허용 범위	초진 불가	재진 원칙 (일부 초진 허용)	재진 원칙 (일부 초진 허용)	재진 원칙	제한 없음 (복지부령 위임)
시행주체	의원급 (일부 병원 허용)	의원급 (일부 병원 허용)	의원급 (일부 병원 허용)	의원급	의원급 (일부 병원 허용)

□ 한계 및 문제점

<제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ㅇ (**대상 환자**) **대상 환자**를 **지나치게 제한**한 결과,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의료 현장**의 **혼란 지속, 국민 불편 심각**

- 특히 **재진 환자***의 **정의 비현실적**, **대상 환자**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 불만**과 **혼란 극심**

* ①동일 질병으로 ②동일 의료기관에서 ③30일 내, ④대면진료 경험 있는 환자

ㅇ (**약 수령 방식**) **약 재택 수령** 가능 **대상**을 **섬·벽지환자, 거동 불편자** 등으로 **극히 제한**하여 **사실상 약 배송 금지**해 과거로 회귀

ㅇ (**국민, 의료인 모두 불만족**) 국회 유니콘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비대면진료 경험 환자, 의사, 약사**에게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모두 **대상 환자 확대 및 약 배송 허용 필요하다고 응답**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ㅇ 대상 환자 초진 포함 폭넓게 허용해야, 의사 81.0%, 약사 71.0%, 환자 49.4%
ㅇ 약 배송 허용해야, 의사 77.0%, 약사 76.0%, 환자 76.5%
ㅇ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의사 83.0%, 약사 76.0%, 환자 55.0%

<입법(법제화) 관련>

ㅇ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보다 **대상 환자**를 **더욱 제한**하는 **내용**의 **포지티브 규제 법안 논의** 중

ㅇ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아 **국회 내 관련 논의 전무**, 제도의 **완결성**위해 **약 배송 논의 반드시 필요**

□ **건의사항**

ㅇ **의료인 권한 확대를 통한 대상 환자 확대**

- **일본**은 **의사단체**의 '**온라인 초진 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 가부**를 **의료인 판단**에 **위임**해 **폭넓게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

-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상 환자**를 **정부**가 **정의·규제**해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 권한**과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

<비대면진료 관련 해외 주요국 의사단체의 가이드라인>

ㅇ 일본 의사회연합, '온라인진료의 초진에 관한 제언'
ㅇ 영국 의사협회(GMC), '원격진료와 처방에 대한 우수 실천 원칙'
ㅇ 프랑스 국립건강보험재원, '원격상담을 위한 모범 실천지침'
ㅇ 독일, 의사협회(Bundesärztekammer), '의료전문가 강령'

ㅇ **약 배송 허용**

- **약 배송**은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채택**한 **보건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순기능 명확**

- **처방된 의약품**을 적시에 **복용**하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 관리** 및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약 배송 허용 필요**

관련법규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의2(처방전)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34조(원격의료) -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붙임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9. 8. 27.>

② ~ ⑤ (생 략)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 ③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약사법

제50조(의약품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참고 현 황

□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20.2.24.~'23.5.31.) 중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심각단계에 한해 지역·대상 제한 없이 시행되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종료

* (시행현황) 코로나19 재택치료 포함 전국 25,998개소(전체 의료기관의 35.7%)에서 1,419만 명 대상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 실시, 코로나19 재택치료 제외한 일반 환자 진료는 827만 건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

○ '23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 논의가 불발되자,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는 '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계도기간 ~8.3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내용>

○ (비대면진료 실시 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원칙.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

*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대면 초진은 휴일·야간에 한해 의학적 상담만 가능(처방불가)

○ (약 수령) 방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가능하나, 재택수령은 섬·벽지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만 가능

□ 관련 동향 및 우려

○ **(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초진 불가 재진 원칙 등을 고수하며, **비대면진료 면책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적 반대 유지하겠다는 입장**

○ (**약사회**) ▲표준화·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 설치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 요구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전면 반대 고수**

○ (**산업계**) 시범사업 시행 후 환자와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계의 혼선 지적하며 ▲초진 대상 확대, ▲재진 기준 완화, ▲약 배송 허용 등 **시범사업 시행 기준 완화 요구**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29개 중 50%에 달하는 14개*가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계 붕괴 우려 현실화

* (관련 기사)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 30년 만의 기회, 원점으로... 플랫폼 줄도산 위기" (조선비즈, '23.9.3.)

○ (**정부**)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 비대면진료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초진 범위 확대, 재진 환자 기준 완화 등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환자 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단체, 심평원, 보사연 등 관계 기관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6.16. 구성 후 3차례의 자문회의 개최

** 9.14.(목)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에서 공청회 개최

□ 우려사항

○ (**성급한 법제화 우려**)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평가 없이 법제화 진행하는 것은 성급할 뿐 아니라 법제화의 절차적 당위성도 훼손

*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함

○ (**사회적 합의 부족**) ▲시행기관, ▲대상 환자, ▲진료 방식, ▲수가, ▲약 수령 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 기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불편과 불만만 가중

- 법제화는 제도의 효과성과 안전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판단하여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친 뒤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 충분

* 국회 유니콘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진행한「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환자 조사 결과, ▲(대상 환자)초진 포함 폭넓게 허용 49.4%, ▲(진료방식) 음성 전화도 허용 69.8%, ▲약 배송 허용 76.5%, ▲병원급도 허용 47.1%, ▲77.7% 비대면진료비 가산수가 비동의, ▲77.5% 비대면조제비 가산수가 비동의

참고 해 외 사 례

□ **대다수 국가**가 **개별 의료진**의 **전문적·의료적 판단**에 따라 **기존 관계가 없던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료**(초진)를 **허용**

□ 의약품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적극적**인 **처방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노력**

<표> 7개 국가의 원격진료 및 의약품 판매 정책('23.5. 기준)

국가	주치의 제한	초진	의약품 배송	비고
일본	없음	가능 ('20.4.~)	가능	- 후생노동성의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온라인 초진 허용 ※ 약 봉투 등 의학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사전 상담 후 의사-환자가 온라인 진료에 합의한 경우
영국	없음	가능	가능	- 별도 규제법 없음(2008년부터 시범사업 시행) - 영국 직역별 규제기관은 「High level principles for good practice in remote consultations and prescribing」을 통해 환자-의사 간 지속적 관계가 없어도 원격진료가 가능함을 명시
프랑스	없음	가능 ('20.3.~)	가능	- 국립건강보험재원의「Charte de bonnes pratiques de la téléconsultation」은 초진은 원격진료 제외되는 사유가 아님을 명시
독일	없음	가능 ('18.5.~)	가능	- 별도 규제법 없음 - 독일 의사협회의 「Musterberufsordnung für Ärzte」 개정으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사-환자 관계가 없어도 원격진료 허용
이탈리아	없음	불가능	가능	- 진단이 공식화된 환자의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진단의 유효기간은 없음 -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원격진료는 가능
캐나다 (온타리오주)	없음	가능	가능	- 별도 규제법 없음(1976년부터 시범사업 시행) - 온타리오주 의사협회의 「Virtual Care Policy」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사-환자 관계가 없어도 원격진료 허용
미국	없음	가능	가능	- 주 단위 의사 면허 제도를 시행하여 같은 주 내 의사-환자 원격진료만 허용 - 1990년 원격진료 합법화

※ 출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과제	온라인 통신판매사기행위 피해 구제
규제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건의내용

○ (규제내용)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등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나 임시조치(송금지연, 일시정지 등)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중개하고 있는 사업자가 계좌를 활용한 피해 의심거래 정황을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현행법상 손을 쓸 수 없고, 피해자인 이용자 개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단순 안내만 가능한 상황임
- 이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경찰에 신고 후 사건이 접수되고,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만 피해 구제를 위한 지급정지가 가능한데, 통상 7~10일이 소요*되고 영장 발부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경찰사건 접수 →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 은행에 계좌지급정지 신청

- 따라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신종 온라인 사기 행위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를 도입하여 즉각적인 피해 방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개선건의)

- 온라인 게시판 운영사업자에게 사기이용계좌 임시조치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신종 사기 행위에 대한 사전적 피해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는 금융회사가 통신판매사기 의심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통신판매사기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붙임1 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신설)

안) 제2조의6(부가통신사업자의 임시조치 요청 등)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는 이용자 간의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행위(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사기"라 한다)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에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사기의심계좌"라 한다)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통신판매사기의심계좌의 명의인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통신판매사기의심계좌가 통신판매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5.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해제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이 초과된 경우 지체 없이 임시조치 해제 사실을 해당 통신판매사기의심계좌의 명의인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국내 참고 사례

□ 국내 사례(법률 개정 참고)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824호)

[개정안 발의 취지] 최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신종 사기행위의 확산과 그에 따른 국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를 방지, 구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개정안 검토보고서] 물론, 개정안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게 될 경우, 모바일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등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도 이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되었음.

※단, 금융기관이 원인 행위에 대한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의 허위신고 악용 가능성,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실시간 모니터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계류 중임

과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리뷰 규제
규제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 건의내용

ㅇ **(규제내용)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제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권리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포털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됨
-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성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견표명을 과도하게 제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왔음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 판단>

ㅇ 2012년, 2020년 헌법재판소는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림

ㅇ 그러나 2020년 결정에서 일부 재판관은 임시조치가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냄

ㅇ 2022년 12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보정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ㅇ **(문제점1) 온라인 플랫폼에서 리뷰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도 불합리한 규제**

-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특성상, 서비스 이용자가 임시조치를 신청

하면 거짓없는 사실에 기반한 솔직한 리뷰를 게시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여야 함

-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현행 임시조치 제도로 인한 문제점 - 사례>

ㅇ 스타트업 A사의 경우,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에 대해 입점업체가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0일간 해당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음

ㅇ 이러한 조치는 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고의적인 '리뷰 삭제'라고 보도하는 등, 소비자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음

- 2021년에는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제도를 신설하고 임시조치 이후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재게시 요청 절차에 사업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이 개입할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ㅇ **(문제점2)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임시조치 제도**

- ISO 20488, OECD 권고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리뷰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국내 스타트업,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리뷰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상충하고 있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스타트업 리뷰정책 개선 - 사례>

ㅇ 스타트업 B사는 2022년 12월, ISO 20488, OECD 권고기준 등을 참고하여 자사 리뷰 게시 기준을 규정한 이용자 리뷰 노출 원칙, 리뷰 게시 중단 절차 등을 마련함

ㅇ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C사는 2023년 5월 ISO 20488에 맞춰 리뷰운영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함

ㅇ (개선건의)

- **자율규제 기조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리뷰 관리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붙임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과제	디지털 도어록 배터리 규제
규제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건의내용

○ **(규제내용)**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디지털 도어록에 1차전지(알칼리 전지)를 사용하는 제품만 안전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고 규정

- 디지털 도어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여, 제품시험을 통한 인증이 필요

  * (관련법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22 디지털 도어록)

○ **(문제점)** 스마트홈 구축에 필수적인 디지털 도어록 시장은 IoT 상용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 중이나, 국내 디지털 도어록 업체들은 **2차전지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이 불가능**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면, **해외에서는 2차전지를 활용**하여 AI 안면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체온측정, 영상통화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킨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는 상황**

< 글로벌 디지털 도어록 시장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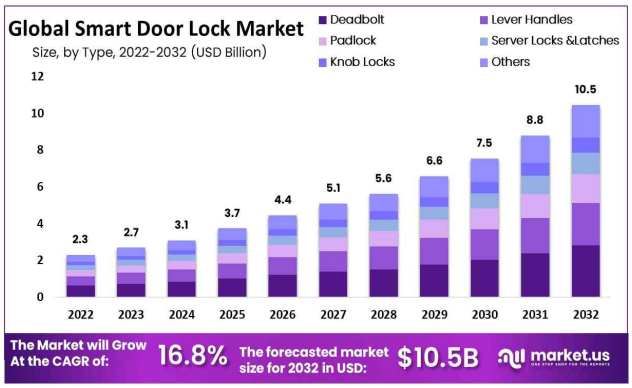

o 2022년 전 세계 스마트 도어락 시장 규모는 USD 2.3 billion

o 2032년까지 USD 10.5 billion 수준으로 성장 전망

o 연평균 성장률(CAGR) 16.8%

o 원격 접근 및 연결, 음성 제어 등의 스마트홈 기술 발달과 안전 및 보완 강화에 관한 대중 수요 증가가 시장 성장 촉진

* (출처) Market.Us

- 실제 중국 샤오미가 IoT 기술을 접목한 도어록을 출시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차전지 금지로 대중국 수출이 77% 급감

* (참고) 샤오미는 IoT 탑재하는데‥韓 '도어록 2차전지 금지'로 中수출 77% 급감(한국경제, 22.10.23)

- 리튬 이온 전지 등 2차전지는 1차전지와 비교하여 **소형화·경량화가 가능**하여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 이미 사용 중이며, **고밀도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고전압까지 가능해 IoT를 접목하기에 매우 적합**

- 최근 기술 발전을 통해 안전성 역시 크게 개선되었으며 2차전지는 1차전지와 달리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환경보호 측면에서 활용이 권장됨

o (개선건의)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디지털 도어록과 관련된 전원 기준을 삭제**하거나 **2차전지 활용을 인증하여 국내 디지털 도어록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 도어록 배터리의 규제개선을 위해 디지털 도어록의 안전기준 개정을 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연구용역을 공고했으나, **규제개선 속도가 더뎌 국내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 규제개선 추진 현황 >

o 그간 국내 업계에서는 2차전지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요구

- 2019년, 한 디지털 도어록 업체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규제 개선을 요청했으나, 소관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디지털 도어락의 2차 전지 사용의 안정성 미확보와 새로운 안전기준 적용 필요성 등을 근거로 **'장기 검토 필요' 사안으로 응답**함
- 2022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스마트홈 제품에 2차전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음
- 최근 산업자원통상부는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리튬이온 전지의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도어록의 안전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을 밝힘
- 2023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 도어록의 이차전지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성 검토 및 시험방법 개발' 과제를 포함한 '2023년도 2차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음

관련법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22 디지털 도어록)
건의성격	■ **신규 건의** □ **반복 건의**
반복건의 이력	▪ 건의경로(또는 건의처) : ▪ 제출일시 : ▪ 건의 결과 :

붙임1 관련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나. 생활
      3) 디지털 도어록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2 디지털도어록)

5.2.1 외부전원 단자

디지털 도어록의 전원은 <주 전원> 및 <비상전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주 전원은 건전지 혹은 어댑터의 직류전원이고 비상전원은 외부에서 전원을 인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붙임2 해외 디지털 도어록 2차전지 적용 제품 사례

구분	제품 이미지	상세 내용
미국		· 제품명 : Sifely S Smart Lock · 제조사 : Sifely · 잠금 장치 유형 : 지문, 암호, Fob, 무선 키 Fob, 앱 및 열쇠 · 전압 : 5 Volts (DC) · **배터리 유형 : Lithium Ion** *美아마존 Smart Lock 부문 베스트셀러
		· 제품명 : Google Nest x Yale Lock · **제조사 : 구글** · 잠금 장치 유형 : 키패드 · 컨트롤러 타입 : Google Assistant, Amazon Alexa, Nest · **배터리 유형 : Lithium Ion(Nest) / alkaline(Lock)**
중국		· 제품명 : Xiaomi Mijia Smart Door Lock Pro · **제조사 : Xiaomi** · 잠금 장치 유형 : 지문, 키패드, NFC, 블루투스, Homekit, Emergency Key 등 · **배터리 유형 : 5000mAh Lithium battery** *적외선 카메라 탑재
		· 제품명 : K20ProMax · **제조사 : KAADAS** · 잠금 장치 유형 : 키패드, 3D 얼굴 인식, 앱 등 · **배터리 유형 : Lithium battery**

과제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요건
규제 소관부처	조달청
비고	조달청 수용불가 의견

□ 건의내용

○ 기존의 제품과 IOT 제품 간의 동일한 품목으로 지정되었을때 나라장터 쇼핑몰에 자동으로 등재할 필요가 있음

※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 (문제점)

- 조달청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조에 따라,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이거나,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①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 다만, 신기술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

②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 또한, 품명 기준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하위

세부품명간에 용도·기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대용이 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ㅇ 한편, “단독경보형감지기(세부품명번호 : 461915601)” 제품은 위의 관련규정을 충족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한 제품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미 등록된 “단독경보형감지기(세부품명번호 : 461915601)”에 일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동일한 세부품명의 제품으로 형식승인을 받았음에도,

ㅇ 조달청으로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제품 개발·제조업체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단독경보형감지기(세부품명번호 : 461915601)”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융합한 제품

ㅇ (개선방안)

-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미 등록된 “단독경보형감지기(세부품명번호 : 461915601)”와 동일한 세부품명의 제품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관련법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붙임	관련 법령

□ 전기안전용품 기준 KC 60334-1

KC 60334-1 20.40항

운전 중에 옮길 수 있거나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이동 부분을 가지는 전동기 구동기기 및 복합기기에는 전동기를 제어하는 스위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이 스위치의 작동 부재는 쉽게 눈에 띄고 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기가 위험요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연속으로, 자동으로 , 원격으로 동작할 수 없는 것이라면, 원격운전을 위해 기기에는 기기의 운전을 멈출 수 있는 스위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스위치의 작동 부재는 쉽게 눈에 띄고 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고) 위험 요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연속으로, 자동으로, 원격으로 동잘살 수 있는 기기의 예로는 송풍기, 출열식 온수기, 공기조화기, 냉장고, 그리고 천막, 창, 도어, 롤링 셔터의 구동장치가 있다.

KC 60334-1 20.49항

원격 운전을 할 때에, 사이클 종료 시 기기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거나 위험요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연속 운전할 수 없다면 기기를 기동하기 전에 운전 지속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로 판정한다.

비고) 오븐 같은 기기의 경우, 운전 지속시간은 기기를 기동하기 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사이클 종료 시 자동으로 스위치가 꺼지는 기기의 예로는 세탁기와 식기세척기가 있다. 위험요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연속 운전할 수 있는 기기의 예로는 송풍기, 출열식 온수기, 공기조화기, 냉장고가 있다.

KC 60334-1 20.51항

기기에 내장된 제어장치는 기기를 원격 운전 모드에서 운전할 수 있기 전에 원격 운전 설정으로 수동 조정하여야 한다. 기기에는 기기가 원격 운전으로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 지시가 있어야 한다. 원격 운전의 수동 설정과 시각적 지시는 다음의 기기에는 필요하지 않다. 위험요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연속 운전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자동 운전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원격 운전할 수 있는 기기 적합여부는 육안 검사로 판정한다.

비고) 위험 요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연속으로, 자동으로, 원격으로 동잘살 수 있는 기기의 예로는 송풍기, 출열식 온수기, 공기조화기, 냉장고, 그리고 천막, 창, 도어, 롤링 셔터의 구동장치가 있다.

참고 국내외 현황 또는 사례

□ 국내 사례

대기업에서는 원격제어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단순하게 매트리스를 가열해주는 기기는 출시되어서 판매되고 있음

□ 해외 사례

(미국) 나스닥 상장사 Sleepnumber와 비상장사로는 Softbank등 유명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Eightsleep이라는 회사가 수면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수면을 개선해주는 온도를 제공하는 제품을 출시해서 서비스하고 있음. 모든 수면 데이터 Cloud에 있는 서버로 업로드되며 모든 기능이 App을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음

참고자료

곽규태(2022),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이성엽 외), 박영사.

국무조정실(2022), 규제샌드박스 백서-신기술이 빛을 보게하다

대한상공회의소(2023), 2023 유통물류 통계집

박준 외(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이슈페이퍼:플랫폼 규제 정책, 2023-1호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제6회 국회현안 대토론회: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발표문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플랫폼과 산업갈등-쟁점과 과제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3), 플랫폼 자율규제 연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22), 대한민국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

STEPI(2021),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개발 연구

아산나눔재단 외(2022), 2022 스타트업코리아!, 정책제안발표자료

어패럴뉴스(2023.3.30.),플랫폼의 가품 거래 방치, 법적 책임 강화된다

유병준 외(2021),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발표자료〕, (사)한국벤처창업학회·(사)한국법정책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이뉴스투데이(2023.5.13.), 시장은 커졌지만…리셀 플랫폼, 수익구조 변화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2),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자료.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23.9.), 스타트업정책동향리포트

한국인터넷진흥원 외(2023),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한국법제연구원(201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기획/제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발행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5,
KTS 빌딩, 11F

작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주연 전문위원
jjung@startupall.kr, 02-548-0269
-이지영 전문위원, 윤민혜 매니저, 방지애 매니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창우 팀장
sachangwoo@kstartupforum.org, 070-7443-9402
-홍수현 매니저

발행 2023.9.19

이 책의 저작권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STARTUP
ALLIANCE


KOREA
STARTUP
FORUM